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81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방조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최용락(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A'(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B'(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00바0000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6:10경 사회 친구인 B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린나이보일러 앞 도로를 초량2동 새마을금고분소 방면에서 동남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도로변으로 주차된 차량, 보행하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와 타이어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팔과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 06:10경 제1항과 같이 B이 피해자 C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및 그 동행자 D에게 다가가 "나는 택시승객이고, 증인을 서주겠다"는 취지로 약 5분간 대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B이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타코미터 그래프 정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
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수사기관에서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및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생생한 대화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신고 당시 사고차량의 차종이나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의 인상착의(왼쪽 귀에 귀걸이 3개 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가 현장에서 C에게 알려준 전화번호가 000-0000-0000로 나비콜 전화번호와 8자리 중 4자리가 일치하는 점, C과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B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의 타코미터 기록이 피고인의 변소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제1회 변론기일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죄사실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기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도 극히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범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지환 _____